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- 24호

『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6월 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조직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: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(군·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
2.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
3.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

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 계 법 령

[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]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(제3조)
 -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
 -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
 -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경비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제정조례에 명시한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사업 전체 추진

나. 추계 결과

- 총 소요액 : **193,873천원**
- 산출기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2013 소요액	추가소요액
홍보, 공유	새마을소식지 제작	27,000	
역량강화	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	4,050	
	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	24,750	
	새마을의날 기념식 및 지도자 연찬회	8,170	
	새마을중앙교육원 위탁교육 및 실비보상	40,123	
사업비	대한민국 심장 희망인천21	30,780	
	새마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	8,200	
	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	25,200	
조직운영	사무실 운영비	9,600	
	인건비(1인)	16,000	
계		193,873	-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출	소 요 액	194	194	204	204	214	1,010
재원 조달		시비 100%	시비 100%	시비 100%	시비 100%	시비 100%	
시비	소 계	194	194	204	204	214	1,010
	일반회계	194	194	204	204	214	1,010
	특별회계						
	기 금						

4. 작성자

○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위원장